

特許法改正論小考

—未備點補完에 參考를 위하여—

(下)

李秀雄

〈韓國工業所有權法學研究院長·辨理士〉

—承前—

5. 特許法 第18條(職務發明에 대한 補償) 改正

特許法 第18條第1項中「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承繼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직무발명에 있어서 발명자에게 전용실시권에 대하여서 상당한 補償을 받을 權利를 許與한다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가 피용자가 한 발명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아닌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발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피용자의 發明意慾을低下시키고 이렇게 되면 결국 會社의 利益에도 直結되는 問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는 企業主의 恣意는 물론이고 전용실시권 아닌 통상실시권만 하게되어 피용자에게 보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6. 特許法 第12條(無權利者の 出願과 正當權利者の 保護)의 改正

(1) 特許法第12條의 규정인 「…冒認한 者가한 출원으로 인하여…正當權利者の 출원은 그 特許를 받지 못하게 된 특허를 출원한 때에 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을 「…正當權利者の 출원은 모인한 자가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현행 규정인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그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특허를 출원한 때에 이를 출원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정당권리자가 특허출원하였으나 모인한 자의 출원으로 인하여 거

절 되었을 경우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정당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게 되어 本規定의立法趣旨에 반하기 때문이다. 즉 특허법 제12조의 입법취지는 정당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으로써 모인한 자가 한 출원으로 정당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모인한 자가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合當하다.

(2) 또 특허법제30조의 단서규정인 「다만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를 「다만 정당권리자는 모인한 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로 개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現行規定인 정당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로 认識되기 때문이다.

7. 特許法 第13條(無權利者の 特許와 正當權利者の 保護)의 改正

特許法 第13條의 단서규정인 「다만 그 특허의 出願公告가 있는 날로부터 5年을 경과한 후에…」를 「다만 정당권리자는 冒認特許의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라고 개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행 규정은 정당권리자가 한 출원이 출원공고가 된 것인지 또는 모인한 자가 출원한 것이 출원공고된 것인지 分明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특허법 제13조의 단서규정은 本文의 내용이 冒認者的 특허가 無效確定된 경우에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을 모인자의 특허출원당시 遷及하여 인정하는 규정에 대한例外規定이기 때문에 上記와 같이 明白하게 하여야 한다.

8. 特許法 第51條第3項(特許發明不實施에 대한 制裁)

「特許廳長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實施의 허여를 받은 자가 그 실시허여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발명을 國內에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職權 또는 利害關係人的申請에 의하여 그 특허권을 取消할 수 있다」라는 條文中…「그 특허권」을 「통상실시권」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허권자는 그 特許發明을 誠實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또 특허청장은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발명을 일정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허가할 수 있는데, 통상실시권을 허가받은 통상실시권자가 일정한期間(3년)内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特許權自體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중에는 一定한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資金의 부족 또는 자금이 없는 경우 등 이유로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해서 그 실시권자가 3년 이내에 적당한 규모와營業的方法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해서 남의 특허권을 취소케 하는 것은 특허권자를 부당히 壓迫하는 결과가 되고 애써 얻은 특허권을 취소시킨다는 것은 특허제도의 根本趣旨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특허권자체를 취소케 하기 보다는 통상실시권을 취소케 하여 특허권자에게 다시 실시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舊特許法 第45條第2項에서는 실시권을 취소하기로 되어 있었고 日本特許法도 이같이 규정되어 있다.

9. 特許法 第64條(侵害로 보는 行爲)의 改正

特許法 第64條第1項第1號의 内容中 「특허가 물건의 발명에 대한 것일 때에는 그 물건을 業으로 生產·販賣…」를 「특허가 물건의 발명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물건의 生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生산·판매

…」로 개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법 第64條의 侵害로 보는 行爲는 直接侵害로 보는 행위의 態樣이 아니이 의재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신규성이 있게 되어 特허間接侵害로 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규정상으로 볼 때에는 直接侵害行爲로 규정되어 있어 모순이다. 또 본규정이 間接侵害行爲임을 褒 밝힐 수 있는 것으로서 同法同條同項第2號에 의하면 「특허가 癡의 발명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癡의 실시에만 사용하는…」로 되어 있고 또 동취지의 규정인 의장법제31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의하면 등록의장에 관련한 物品의 生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등으로 되어 있다.

10. 特許法 第69條(特許의 無效果由)의 改正

특허법제69조제1항제1호의 特許無效果由에 特허법제7조제1항(발명의 신규성의 摘制)과 동법第9條(1발명 1출원)를 추가한다.

그 이유는 (1) 발명의 신규성의 摘制規定은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重且大한 것으로서 발명에 신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과 발명이 出願前國內에서 公知公用 또는 国내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규성이 의재되어 특허가 賦與되고 만약 이에 위반하여 특허가 부여되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물론 善意의 第3者에게 不測의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을 것이다.

또 특허법을 거의 適用내지 準用하고 있는 실용신안법 제19조(실용신안의 등록의 무효사유)에서는 고안의 신규성의 의제 규정(실용신안법제19조)을 포함하고 있어 특허법에도 상기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特許無效果由에 또 1발명 1출원주의에 관하여 특허법제9조를 추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클레임이 多項制가 아닌 單項制이므로 이에 위배하여 클레임에 2개의 발명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無效果判의 대상이 되게끔하여 權利擴大解釋을 방지하고 선의의 제3자를 불측의 손해로부터 豫防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1발명 1출원에 위배하여 특허를 허여할 때는分割許可審判에 의해 2개의 특허로 분할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결국 權利範圍擴大解釋을 가져오므로 타당치 않다. *

社會不條理一掃로 總和安保이룩하자 !